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9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혜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춘선, 유만희,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장태용,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수가 차이가 커 대중교통 이용 편의의 상대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접근성 보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u><신 설></u></p> <p>2. ~ 11.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중 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 약지역 접근성 보완</u></p> <p>2.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1항제1호의2에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1항제1호의2에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